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706호)	최민희의원	2024. 9. 5.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6.)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 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539호)	황정아의원	2024. 10.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257호)	이헌승의원	2025. 3.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586호)	조인철의원	2025. 5. 22.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717호)	김상훈의원	2025. 6.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763호)	이해민의원	2025. 6.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937호)	최민희의원	2025. 6.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048호)	구자근의원	2025. 6.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이해민의원	2025. 6. 30.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16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291호)	강승규의원	2025. 7.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392호)	인요한의원	2025. 7.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402호)	이상휘의원	2025. 7.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594호)	조인철의원	2025. 7.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484호)	박상혁의원	2025. 8. 28.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축조심사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박상혁의원	2025. 8. 29.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49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595호)	조인철의원	2025. 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613호)	최수진의원	2025. 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762호)	조인철의원	2025. 9.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916호)	한민수의원	2025. 9.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957호)	최민희의원	2025. 9.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이훈기의원	2025. 9. 17.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06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843호)	조인철의원	2025. 10.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885호)	황정아의원	2025. 11.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006호)	이주희의원	2025. 11. 7.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19.)에서 위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고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침해사고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한편,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불범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

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나.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과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 연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45조의5 신설).

마.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47조의7제2항).

바.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아.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여부로 확대함(안 제48조의4).

자. 이행강제금,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도입함(안 제48조의7 부터 제48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직원"을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바.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절차, 자료 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4. 이 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의7의 제목 중 "특례"를 "차등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 중 “예보·경보”를 “예보·경보·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

전의 제4항) 중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를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여부 및 원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인”을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자료의 제출을 명할”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

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제2조제1항제7호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로 한다.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제7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삭제하고, 제9호의3을 제9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8과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8.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 및 제11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다)----------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신 설>	바.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신 설>	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절차, 자료 제출의 범위 및 평

	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생 략)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	⑧ ----------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⑩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 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생 략)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2. ----------예보·경보·통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

	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

	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 ③ (생 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발생 여부 및 원인을----------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발생여부 및 원인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④ ----------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⑤ ----------발생 여부 및 원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자료의 제출을 명할----------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⑦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분석이----------.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

	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신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

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 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신 설>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신 설>	3. 제2조제1항제7호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신 설>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신 설>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신 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제73조(벌칙) ----------

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제76조(과태료) <신 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6의5. (생 략)	1. ~ 6의5. (현행과 같음)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6의8.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 9의2. (생 략)	7.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신 설>	9의4. (현행 제9호의3과 같음)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4의4. (생 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삭 제>
<신 설>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12의2. ~ 25. (생 략)	12의2. ~ 2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⑤ ----------제4항----------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 설>	----------.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